

Chapter 2 The Nature of the Real Rights Law for Security

제3절 담보물권의 성질

I. 담보물권의 본질

1. 물권성

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

나. 배타성, 우선적 효력이 확보된 물권

2. 타물권

가. 독일 민법은 소유자저당을 인정함(독민 1163조 1항)

나. 민법은 소유자저당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경우 혼동의 예외로 인정
(191조 1항 단서)

3. 가치권성 : 가치권적(Wertrecht) 성질

가. 담보물권은 가치권으로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담보목적 달성함

나.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직접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아님

다. 저당권과 권리질권(채권, 주식)은 가치권의 성질을 제대로 갖추

--> 동산 질권은 유치적 효력에 의존함으로 가치권성이 약함

II. 담보물권의 通有性

1. 의의

가. 각종 담보물권은 각각 특수한 성질이 있으나 채권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인하여 담보물권에 공통되는 성질이 있음.

나. 이러한 담보물권의 통유성도 민법상 모든 담보물권에 똑같은 것은 아니며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

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으로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을 들고 있다.

2. 부종성

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성질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존재 불가함.

1)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한다(369조).

- 2) 부종성은 유치권과 같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요구되나
질권과 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에서는 상당히 완화됨.

나. 부종성의 완화

- 1) 피담보채권이 일시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 2) 근저당(제357조) -- 지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담보물권

3. 수반성(이전상의 부종성)

가.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이전에 따라 담보물권도 이전함.

-> 일반적으로 채권과 함께 담보물권도 이전한다는 합의가 있음.

나.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질권)이 설정되면 담보물권도 역시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361조).

예)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시 담보물권도 이에 수반하여
이전 또는 질권에 복종함.

cf. 부종성과 수반성을 합하여 부수성이라고도 함.

[판례1]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예수금등반환】

【판결요지】 [1]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

4. 물상대위성

가.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익보다는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 교환가치를 대표한 것에 미친다는 성질을 말함(342조, 370조)

나.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 --> 그 목적물에 갈음함

예) 목적물이 보험금지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보상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

다. 담보물권의 가치권성이 희박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음.

5. 불가분성(321조)

가. 피담보채권의 全部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 위에 그 효력이 미치는 성질 -->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면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 전체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침.

나. 담보물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청됨.

다. 담보물권의 일부가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멸실한 경우에도 그 잔존부분이 全債權에 미침.

제4절 담보물권의 효력 및 순위

I. 담보물권의 효력

1. 제한물권적 담보물권의 효력

가. 우선변제적 효력 : 질권, 저당권 및 실질상 유치권 포함 -- 본체적 효력

- 1) 담보물권 중 가장 큰 효력
- 2)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 변제받음.

나. 유치적 효력

- 1)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하여
- 2)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변제를 확보서 -- 유치권, 질권

다. 수익적 효력 : 전세권

- 1) 전세권에는 용익적 요소와 담보물권적 요소가 있으므로 수익적 효력 있음.
- 2) 구민법에는 부동산질권이 인정되어 정면으로 수익성 인정이 어려웠음.

라. 물권으로서의 일반적 효력

2. 소유권이전형 담보물권의 효력(비전형담보제도)

가. 소유권 취득적 효력 -- 채무변제가 없으면 권리가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경매 등으로 목적물을 환가하여 정산함으로써 우선변제적 효력 인정.

나. 수익적 효력 -- 양도담보, 매도담보, 대물변제예약 등 목적물의 유치에 의한 수익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됨.

[담보물권의 성질과 효력]

구 분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우선변제적 효력	유치적 효력
유치권	0	0	0	×	× 사실상 우선변제적 효력 있음.	0
질 권	0	0	0	0	0	0
저당권	0	0	0	0	0	×

II. 담보물권의 순위

가. 담보물권의 순위는 목적물 위에 두 개 이상의 동종의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들 상호간의 우열을 말함.

나. 담보물권은 성립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333조, 370조).

다. 순위승진의 원칙

- 1) 선순위 담보물권이 소멸시 후순위 담보물권의 순위가 승진
- 2) 담보물권이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입법례
--> 우리나라에서 채택

라. 순위확정의 원칙

- 1) 담보물권(특히 토지채무)이 독립한 가치권으로 확립되어 있는 입법례
--> 선순위 담보물권이 소멸하더라도 후순위 담보물권이 당연히 승진 안됨.

- 2) 독일 민법에서 채택